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02 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이수진·송옥주·김준혁

이원택 · 김문수 · 추미애

민병덕 · 장철민 · 김현정

최기상 · 김영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 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.

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,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러 목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러목 중 "20만원 이하"를 "3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		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		
세하지 아니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	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소득			
가. ~ 더. (생 략)	가. ~ 더. (현행과 같음)		
러.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	러		
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			
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			
또는 근로자(식사 기타 음			
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			
자에 한정한다)가 받는 월			
20만원 이하의 식사대	<u> 30만원</u>		
머. ~ 처. (생 략)	머. ~ 처. (현행과 같음)		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		